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4536

발의연월일: 2024. 10. 4.

발 의 자:이훈기・맹성규・손명수

김정호 · 김태선 · 허종식

김태년 · 허 영 · 김우영

김교흥 · 황정아 · 이광희

노종면 • 이기헌 • 박희승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동통신사업자가 정당이나 선거여론조사기관에 휴대전화가상번호를 제공할 때, 이용자에게 본인의 이동전화번호가 정당이나선거여론조사기관에 휴대전화 가상번호로 제공된다는 사실과 그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릴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이동통신사업자의 이용자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조항이 없음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가 고지의무를 해태하여 이용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동통신사업자가 이용자 본인의 이동전화번호가 정당이나 선 거여론조사기관에 휴대전화 가상번호로 제공된다는 사실과 그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하는 고지의무를 위반한 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려는 것임(안 제261조제3항제1호의2 신설).

법률 제 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1조제3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57조의8제6항(제108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본인의 이동전화번호가 휴대전화 가상번호로 제공된다는 사실과 그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제26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①・② (생 략)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③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u> <신 설></u>	1의2. 제57조의8제6항(제108조
	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
	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
	용자에게 본인의 이동전화번
	호가 휴대전화 가상번호로 제
	공된다는 사실과 그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리지 아니한 자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④ ~ ② (생 략)	④ ~ ⑫ (현행과 같음)